

『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문화원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,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7조에서 구미문화원의 사업에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구미문화원의 사업범위를 재정립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개정(개정2011.7.11 시행2011.10.22)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·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